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광성 의원)

의안 번호 266

발의연월일: 2024년 5월 13일

발 의 자: 김광성 의원

찬 성 자: 김성기, 이은미, 박춘희의원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사람과 가축·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평창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축산농가의 책무(안 제4조)
- 다. 지원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축산법」제3조

나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첨부)

다. 입법예고: 2024. 4. 11. ~ 2024. 5. 1.(20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4. 3. 28. ~ 2024. 4. 5.(9일간), 아래표 참조.

조례안(의회안)	검토안 (축산농기계과)	사유 (축산농기계과)	의회 의견
제5조(지원)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 가축분뇨 퇴비, 액비 등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2.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		(숙산동기계과) 제5조제2항에 대한 사유 ○ 조례에 규정되 어 있지 않은 사항 에 대한 적용 근거 조항 추가	[원안유지] ○ 보조금 지원 관련 안5조 외에 <u>다른 조문에</u> 서 보조금 지원 관련 규 정이 없기 때문에,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」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.
3.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 4.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		○ 보조금 관련하여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르기 때문에, <u>개별조례에 규정</u> 하는 것은 규정의 실익이 없고, 입법경제상 바람 직하지 않음.
<u>〈신 설〉</u>	② 이 조례에 규 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		※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지방보조 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 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.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축산업"이란 <u>「축산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4호</u>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.
- 2. "축산농가"란 <u>법 제22조제1항</u>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<u>같은 조 제3</u> 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축사"란 <u>법 제8호의2</u>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·돈사·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축산환경"이란 <u>법 제2조제10호의2</u>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.
- 5. "축산환경 개선"이란 축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·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는(이하 "군수"라 한다)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축산농가의 책무)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.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원)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가축분뇨 퇴비, 액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
 - 2.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
 - 3.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
 - 4.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축산법

[시행 2023. 1. 1.]

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・증식, 토종 가축의 보존・육성, 축산환경 개선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・가격안정・유통개선・이용촉진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2. 2. 22., 2013. 3. 23., 2018. 12. 31.>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4. 4. 1.]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관련조문 : 조례안 제5조(지원)

나. 비용발생 요인 : 축산농가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축산농가 328개소(2024. 4월 기준) 대상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
 - 축사 악취저감제, 톱밥, 가축분뇨 처리장비, 퇴비사, 액비생산시설, 액비순 환시스템, 악취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·장비 등 지원

나. 추계 결과

구 분	산출기초(2024년)	예산액	비 고
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	33천원×3,030포	100,000천원	자체사업
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	300원/kg×2,334톤×50%	350,000천원	자체사업
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	40,000천원×4개소×50%	80,000천원	도비+자체
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	50,000천원×3개소×50%	75,000천원	도비+자체
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	50,000천원×1개소×50%	50,000천원	도비사업
액비순환시스템 지원	150,000천원×1개소×50%	75,000천원	도비사업
기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	50,000천원×2개소×50%	50,000천원	도비사업
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	5,000천원/톤×10톤×50%	25,000천원	도비사업

다. 재원조달 방안 : 국비 보조 및 자체 재원(2024년 당초예산 편성)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
연락처	(033) 330 - 1306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서	입	0	0	0	0	0	0
서	출	780,000	780,000	780,000	780,000	780,000	3,900,000
축사 악 구	취경감 발효제 입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황경축(공	산기반용 톱밥 급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1,750,000
다목적 장 비	가축분뇨 처리 지 원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400,000
	축산 퇴비자원 시 설 지 원	75,000	75,000	75,000	75,000	75,000	375,000
고품질 지	액비생산시설 원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액비순환	한시스템 지원	75,000	75,000	75,000	75,000	75,000	375,000
	ː 배출시설 악 감 지 원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- 부숙촉? 지	인 악취저감제 원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자	원 조달	780,000	780,000	780,000	780,000	780,000	3,900,000
이즈	소 계	72,000	72,000	72,000	72,000	72,000	360,000
의존 재원	보조금	72,000	72,000	72,000	72,000	72,000	360,000
	지방교부세						0
	소 계						
	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3,540,000
자체	지방세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3,540,000
자체 수입	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
	지방세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0
수입	지방세 세외수입						0
수입	지방세 세외수입 군비						0
수입 	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지방채						0
수입 공기(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지방채 기 금						0
수입 	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지방채 기 금 업 특별회계						0